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1호 2008년 3월 pp.9~43
한국세무학회

세무행정요인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 세무대리인의 특성별 영향을 중심으로 -

홍정화* · 고병숙**

<요 약>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행정요인들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러한 요인들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로는 전국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보조 실무자들이었으며 이들에게 총 5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한 426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가설검증을 위하여 더미변수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당국과의 상호신뢰성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세무대리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의외의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세무대리인이라는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세무당국의 홍보 및 교육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나, 그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당국의 홍보와 교육 정책은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자신고납부제도의 발전은 조세회피성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신고납부제도의 발전이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사회활동 정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세무당국이 최근에 실시하기 시작한 납세인센티브제도는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세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하면 조세회피성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납세인센티브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사회활동의 정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제어> 세무행정요인, 조세회피성향, 세무대리인의 특성

* 경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jhhong@kyungwon.ac.kr, 031-750-5215, 주저자

** (주)광고TNS 대표, 경영학박사, kbskbs@chol.com, 02-749-8700, 공동저자

I. 서 론

조세는 국가와 사회를 존립시키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으로서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 부담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세부담자는 조세를 가시적인 대가없이 일방적인 재산권의 강제이전으로 인식함으로써 납세에 대한 거부반응을 일으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조세회피¹⁾가 만연하게 되면 정부가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으며, 지하경제²⁾가 확대되어 세입뿐만 아니라 세출 면에서도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어 행정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어렵게 된다. 또한 조세부담의 공정성이나 소득의 재분배라는 조세행정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고 성실한 납세자의 소득을 불성실한 납세자에게 이전시키는 폐해가 발생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조세법 관련규정은 복잡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조세법 규정에 따르면서 조세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세무대리인은 조세법 관련 규정에 근거한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세정발전에도 기여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은 많은 경우에 조세법 규정의 준수보다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성향을 보일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납세자와 과세당국은 세무대리인에게 각각 상반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은 양측의 기대를 놓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 있는 세무대리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세무대리인의 역할 및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당연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Neumann & Morgenstern(1947)의 기대효용이론에 기초하여 Milliron(1988), Cuccia(1994) 등이 있으며, Kahneman & Tversky(1979)의 예상이론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Sanders(1986), Sanders & Wyndelts(1989), Duncan 등(1989), Schisler(1994) 등이 있다. 국내의 연구로는 이선표(1997), 박기정과 조용언(1997) 및 홍정화와 김연식(2003), 홍정화와 김연식(2004) 등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납세자의 신고소득수준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하여 검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세무행정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한 연구로는 Song & Yarbroug(1978), Tittle(1980) 등이 있으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없었다.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을 보면, 독립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기존연구들은 이미 알려진 일정한 변수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1) 조세회피란 조세순응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조세채무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절세와 탈세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홍정화·김완희, 1997).

2) Gutman(1977)은 “지하경제란 조세로부터 벗어난 거래”라고 정의하였다.

등 이미 검증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변수들을 제외시키고,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세무행정 관련 변수(전자신고납부제도, 납세인센티브)를 중요한 변수로서 선정하였다. 그리고 조절 변수의 선정에 있어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변수들과 함께, 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의 정도를 새로이 선정하여 납세자의 사회활동의 정도가 조세회피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행정요인으로서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상호신뢰성, 과세당국의 홍보활동과 교육, 과세당국의 전자신고납부제도 및 납세인센티브제도 시행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둘째, 위와 같은 세무행정요인들이 세무대리인들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특성요인으로서 세무대리인의 직군, 연간소득수준 및 사회활동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1. 조세회피요인의 검토

기존연구에서 나타난 조세회피의 요인은 세율, 조세회피의 만연도, 정부와의 상호신뢰성, 조세의 공평성, 세무대리인의 이용, 세법지식, 조세윤리, 세법의 복잡성, 조세회피의 제재, 적발확률, 세무당국의 간섭, 성별,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세무행정요인과 인구통계적 특성요인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가. 세무행정요인

(1) 정부와 상호신뢰성

정부와 상호신뢰성은 정부가 납세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공평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성 정도를 말한다. 즉 조세와 관련한 납세자들이 정부를 신뢰한다는 것은 조세의 부과측면과 조세의 지출측면을 포함하는 의미를 지닌다.

Vogel(1974)은 정부가 세금을 의미 없는 목적에 사용(56%가 동의)하고 있고 불필요한 사회개혁에 세금을 낭비(51.5%가 동의)하고 있다고 응답을 한 납세자가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납세자의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Song과 Yarbrough(1978)는 미국 국세청이 효율적인 조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징수능력을 신뢰받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은 줄어든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두 연구의 결과에서 조세순응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홍보 및 교육

과세당국이 신고누락에 대한 경고장을 보내는 등의 홍보 및 교육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조세순응 요인이다.

Title(1980)에서는 과세당국의 홍보나 교육과 같은 비정규적 제재가 법 규정에 의한 제재 보다 강한 방지효과를 갖는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3) 전자신고납부제도 도입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세무당국은 전산체계를 수립하여 조세자료의 수집과 크로스 체크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으로 감시기능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용카드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제도 등과 같은 혜택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정보기술의 발달을 반영한 전자신고납부제도의 도입은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자신고납부제도의 도입을 요인으로 한 선행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 납세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기대하여 도입되고 있는 각종 납세인센티브제도는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과세당국이 납부한 세금의 크기에 따라 세금마일리지 혜택을 부여하고 성실한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포상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납세인센티브제도는 조세순응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납세인센티브제도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납세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조세회피요인으로 연구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5) 과세당국의 간섭

세무당국이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거나 신고누락에 대한 경고장을 보내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 등으로 실시되는 세무당국의 간섭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조세순응요인이다. 한 가지 사실은 과세당국이 간섭을 증가시키는 것이 조세저항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Witte와 Woodbury(1983)는 과세당국이 활동수준의 강도를 높일 때 납세자를 조세순응측면으로 유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과세당국의 간섭이 납세자의 조세회피 수준을 줄인다는 사실을 발견한 Spicer와 Hero(1985)에 의해 지지되었다.

(6) 세무대리인의 이용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에게 충고자로서가 아니라 때때로 납세자의 조세의무를 경감해 주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임의 참가자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Slemrod와 Sorum(1984)에서 납세자의 조세행위결정에 있어서 세무대리인의 이용여부가 유의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ard(1993)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할 경우 납세자는 조세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7) 조세의 공평성

조세의 공평성은 조세의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의미한다. 수평적 공평성은 동일한 조건의 납세자는 동일한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수직적 공평성은 높은 소득의 납세자에게 상대적으로 무거운 조세부담을 지우고 낮은 소득의 납세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세부담을 지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Spicer와 Becker(1980)는 실험실 실험에서 가상의 조세회피 의사결정에 직면한 피험자들은 그들이 불공평한 조세제도의 희생자라고 느낄 때 조세회피 금액을 현저히 증가시키며, 그들이 불공평한 조세제도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얻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에는 조세회피금액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Mason과 Calvin(1984)에서는 조세의 공평성이 조세순응정도와 관계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고, Song과 Yarbrough(1978)에서는 조세의 공평성이 조세순응정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인구통계적 요인

(1) 직군

세무대리인으로는 변호사,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가 있으나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보조자인 직원에게 기장업무 등을 배분하여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처럼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하느냐 또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으로서 단순한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조세회피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Cuccia(1994), 이환근(1998) 및 홍정화와 김연식(2004)은 세무대리인의 직군으로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연구한 바 있다.

(2) 소득수준

소득수준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주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대부분 조세회피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나타난 반면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Srinivasan(1973)은 적발확률이 일정하면 누진세제하에서 납세자의 실제소득이 증가할수록 과소 신고소득의 비율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Spicer와 Lundstedt(1976)는 가구당 소득과 조세저항 사이에는 부(-)의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Srinivasan(1973)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다. Witte와 Woodbury(1983)는 미국 국세청의 납세의무수준 측정프로그램인 TCMP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수준과 조세순응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간정도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가 가장 순응적이고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소득수준의 납세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순응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국내의 연구로 소득수준이 조세회피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거나(전태영, 1990), 관계가 불확실하거나(유시영, 1993),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홍정화·김완희, 1997) 다양한 결과를 보였다.

(3) 사회활동정도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이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경우 여러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고 세무당국과의 관계에서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회활동의 정도가 소극적인 경우 보다 자신의 위상을 유지하려는 욕구도 강할 것이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의 사회활동의 정도는 거래처와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사회활동의 정도라는 세무대리인의 특성 요인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사회활동의 정도를 조세회피요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4) 교육수준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변수로서의 교육수준은 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고 그것을 준수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관계가 있는 변수이다.

Lewis(1982)는 첫 번째 측면에 있어서 유럽지역에서의 세무연구를 검토한 후,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세금을 단지 부담으로만 생각하고 공익을 얻는데 대한 반대급부라는 점을 무시하는 경향이 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있어서 재정일반에 대한 지식부족은 세금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Witte와 Woodury(1983)는 중소기업가 집단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조세회피 정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조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미국 국세청의 교육노력이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납세자집단의 조세순응성향을 증진시키는데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 세법지식

세법지식수준은 세법에 관한 보통의 지식수준과 조세회피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나누어 볼 수 있다. Lewis(1982)는 보통의 지식수준에 있어서 유럽지역의 세무연구를 검토한 후, 세법지식수준이 낮은 납세자들은 세금을 부담으로 생각하고 공익을 얻기 위한 반대급부라는 점을 무시하기 때문에, 세법에 대한 지식부족은 세금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조세회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수준에 있어서는 세법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세법의 복잡성 또는 모호성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조세회피의 규모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무대리인의 세법지식이 조세회피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6) 조세윤리

조세윤리는 조세순응도와 관계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조세순응도와 정(+)의 상관관계도 있었다.

홍정화와 김원희(1997)에서는 조세윤리가 조세회피정도와 관계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정환(1996)에서는 조세윤리가 조세회피정도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Jackson과 Milliron(1986)의 “윤리척도가 미래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영역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고려해볼 때 비록 이를 측정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연구자마다 그 척도를 달리할 지라도 이 요인은 납세자의 행동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본다.

최근 조세윤리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선행연구로는 김원태(2003) 및 허기우(2007)이 있다.

2. 선행연구의 검토

가. 외국의 선행연구

Vogel(1974)은 정부가 세금을 의미 없는 목적에 사용(56%가 동의)하고 있고 불필요한 사회개혁에 세금을 낭비(51.5%가 동의)하고 있다고 응답을 한 납세자가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납세자의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Song & Yarbrough(1978)는 미국 국세청이 효율적인 조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징수능력을 신뢰받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은 줄어든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두 연구의 결과에서 조세순응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ittle(1980)은 과세당국이 신고누락에 대한 경고장을 보내는 등의 홍보 및 교육에 대하여 검증하였는데, 비정규적 제재가 법 규정에 의한 제재 보다 강한 방지효과를 갖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Milliron(1988)은 성실납세를 유도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방안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인식기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즉, 공인회계사는 독립된 전문직업인으로서 세무대리과정을 통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중요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들의 인식과 태도는 조세정책에 대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연구의 배경으로 하였다. 독립변수로서 손금항목, 국세청의 행정서비스, 원천징수 및 보고,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 세무조사확률, 세율,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제재) 등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세율과 손금항목은 성실납세유도에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성실납세유도를 위한 정책대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지지되었다.

Duncan 등(1989)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요인 및 그 작용과정을 연구하였다. 특히, 세무대리인은 경력이 많을수록 공격적인 자문을 할 것이고, 세무문제에 대한 세무지식이 많고 정통할수록 공격적인 자문을 할 것이며, 납세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세무상의 분쟁에서 승소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적인 자문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가설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세무대리인의 경력연구나 연령은 기존연구와는 달리 아무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무문제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전문적 지식수준(정통성)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2년간에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세금분쟁에서 승소경험이 많은 세무대리인일수록 세무대리 의사결정에 있어서 더욱 공격적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Schisler(1994)는 현실적으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납세자의 수요는 급증하는 추세임에도 납세자의 성실납세 자세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성실납세문제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이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나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연구결과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제재 등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적인 고객의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은 더욱 공격적인 반면, 보수적인 고객과 관련된 세무대리인의 경우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국내의 연구

이선표(1998)는 세무대리인에게 직면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어떤 변수가 고객에게 적극적인 세무신고 입장을 권고하는 의사결정과 관련되는지를 연구하였다. 즉, 경제적 요인 및 인구통계적 요인이 고객에게 적극적인 세무신고입장을 권고하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적 요인은 고객에게 적극적인 세무신고입장을 권고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세무대리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구통계적 요인과 적극적인 세무신고 입장결정이나 의사결정모형 유형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격증과 근무연수만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으며, 나이·교육정도·전공분야 및 세무대리실무 경험정도는 적극적인 세무신고 입장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정화와 김연식(2004)은 세무대리인이 고객인 납세자의 세무대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구통계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의 출신배경 변수는 세무대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무대리인의 경력이나 연령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세무대리 의사결정에 대체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설계

1.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회계사무소 기장담당자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세무행정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세무행정요인 중 상호신뢰성, 홍보 및 교육요인은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전자신고납부제도와 납세인센

티브 요인은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검증이 시도된다. 그런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세무대리인의 직군³⁾, 연간소득의 크기⁴⁾에 따라 조세회피성향이 달라 질 것으로 보이고, 세무대리인의 사회활동의 정도⁵⁾에 따라 조세회피성향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세무대리인 특성 요인들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세무당국과의 상호신뢰성에 관한 가설의 설정

세무당국과 납세자간의 상호신뢰성은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Vogel 1974, Song & Yarbrough 1978).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성향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세자와 세무당국간의 상호신뢰성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직군, 연간소득수준 및 사회활동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을 기대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 1>, <가설 1-1>, <가설 1-2>, <가설 1-3>을 설정한다.

<가설 1> 세무당국과의 상호신뢰성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세무당국과의 상호신뢰성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직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세무당국과의 상호신뢰성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세무당국과의 상호신뢰성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사회활동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나. 세무당국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가설의 설정

세무당국의 홍보 및 교육활동은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세무당국의 홍보나 교육의 일환으로서 신고안내문에 적혀진

3)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행태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거래처를 할당받아 관리하고 관리성과에 대하여 성과급을 받는 현실적 여건으로 보아 거래처에 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다.

4)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보면, 소득수준이 조세회피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거나(전태영, 1990), 관계가 불확실하거나(유시영, 1993),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홍정화 · 김완희, 1997) 다양한 결과를 보이는 바,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5) 세무대리인으로서 종교, 사회봉사 및 기부활동 등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 이들은 공익을 중시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활동의 정도가 세무당국과의 관계에서 조세회피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메시지들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납세순응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ittle 1980). 따라서 세무당국의 홍보 및 교육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연간소득수준 및 사회활동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기대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 2>, <가설 2-1>, <가설 2-2>, <가설 2-3>을 설정한다.

<가설 2> 세무당국의 홍보 및 교육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세무당국의 홍보 및 교육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직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세무당국의 홍보 및 교육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세무당국의 홍보 및 교육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사회활동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에 관한 가설의 설정

전산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세무당국은 전산체계를 수립하여 조세자료의 수집과 크로스 체크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으로 감시기능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용카드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제도 등과 같은 혜택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전산기술을 반영한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은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전자신고납부제도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직군, 연간소득수준 및 사회활동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기대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 3>, <가설 3-1>, <가설 3-2>, <가설 3-3>을 설정한다.

<가설 3>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직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2>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3>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사회활동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 과세당국이 부여하는 납세인센티브에 관한 가설의 설정

과세당국이 납부한 세금의 크기에 따라 세금마일리지 혜택을 부여하고 성실한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포상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납세인센티브제도는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납세인센티브제도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인센티브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직군, 연간소득수준 및 사회활동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기대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 4>, <가설 4-1>, <가설 4-2>, <가설 4-3>을 설정한다.

<가설 4> 과세당국이 부여하는 납세인센티브는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과세당국이 부여하는 납세인센티브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직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2> 세무당국이 부여하는 납세인센티브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3> 세무당국이 부여하는 납세인센티브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사회활동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가. 세무행정요인에 관련한 변수

세무당국과 납세자의 상호신뢰성은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줄 것이며, 나아가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홍보 및 교육의 확대,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 납세인센티브제도 등의 세무행정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1) 상호신뢰성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고 세무당국과 납세자가 상호 신뢰하는 정도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정부가 납세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공평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출하고 있는 지에 대한 신뢰정도를 말한다.

상호신뢰성에 대한 측정은 세무당국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을 성실한 납세자로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인식을 조사 및 측정하도록 리커트 5점 척도의 설문항목으로 한다.

(2) 홍보 및 교육

세무당국은 납세자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나아가 긍정적인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 세무행정 및 세무지식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세무당국이 실시하는 납세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방법을 강화하면 조세회피행위가 줄어들 것. 인지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인식을 파악하는 설문항목을 5점 척도로 제시하여 측정한다.

(3) 전자신고납부제도

조세자료의 수집과 크로스 체크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전산화로 인한 과세당국의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은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항목에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으로 조세회피행위가 모두 적발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인식을 파악하는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한다. 또한 최근에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는 신용카드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제도가 조세회피행위를 어렵게 하는지를 파악하는 항목을 제시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한다.

(4) 납세인센티브

납부한 세금의 크기에 따라 세금마일리지 혜택을 부여하고 성실한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포상하는 등의 납세인센티브제도는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항목에 세금마일리지 혜택은 조세회피행위를 줄어든게 하는지, 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조세회피행위를 줄어든게 하는지 등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인식을 파악하는 항목을 제시하여 측정한다.

(5) 조세회피성향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은 거래처인 납세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납세자의 조세채무를 경감시키는 성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무대리인은 세금회피기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것인지, 가산세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수단과 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설문항목을 제시한다.

나. 세무대리인의 특성에 관련한 변수

조세회피요인으로 선정된 독립변수들도 조사대상자인 세무대리인의 특성에 따라 이들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무대리인의 특성인 직군, 연간소득, 사회활동 정도를 조절변수로 선정한다.

(1) 직군

세무대리인의 직업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처럼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하느냐 또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으로서 단순한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조세회피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항목에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 회계사무소의 기장담당자 항목으로 열거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2) 연간소득수준

소득수준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조세회피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나타난 반면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인식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지 항목에 연간소득을 1억원 초과, 5천만원 초과 1억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원,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2천만원 이하로 열거하고 선정하도록 한다.

(3) 사회활동정도

세무대리인의 사회활동의 정도는 거래처와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사회활동의 정도라는 세무대리인의 특성 요인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항목에 봉사활동 또는 자선(기부)의 정도를 파악하는 항목을 제시하여 세무대리인의 사회적 활동 정도를 측정한다.

3. 자료의 수집방법

가. 자료의 수집 및 회수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로서는 전국 세무회계사무소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회계사무소 실무직원으로서 하며, 자료의 수집은 설문지를 통하여 실시하며 설문지의 설계 및 배부, 회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설문지의 내용은 조세회피의 요인을 세무행정요인 4가지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세무대리인의 특성에 관하여 인구통계적인 항목을 설정하고 조세회피성향에 관하여 구성하였다.

본 설문지의 구성은 <표 1>에 나타나 있으며, 설문은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8개 항목으로 나누었으며,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설문지의 구성

구 분	항 목	문항수	문항 번호
I. 인구통계적 특성 (3문항)	직군	1	I-1
	연간소득수준	1	I-2
	사회활동정도	1	I-3
II. 세무행정요인 (8문항)	상호신뢰성	2	II-1, II-2
	홍보 및 교육	2	II-3, II-4
	전자신고납부제도	2	II-5, II-6
	납세인센티브	2	II-7, II-8
III. 조세회피성향 (3문항)	조세회피기회의 활용 및 조세윤리	3	III-1, III-2, III-3
총 3 구분	총 8항목	총 14문항	

설문조사의 대상자들은 전국의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및 세무회계사무소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2006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 동안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지의 조사방법으로는 전국의 세무대리인의 분포 등을 감안하여 세무회계사무소 57개소에 570부를 발송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519부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것을 제외하고 426부를 대상으로 통계처리하였다. 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현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 현황

지역	발송	회수	회수율
서울	250	242	96.8%
경기	170	153	90.0%
인천	30	30	100.0%
대전, 충청남북도	20	20	100.0%
광주, 전라남북도	20	16	80.0%
대구, 경상북도	20	14	70.0%
부산, 울산, 경상남도	50	34	68.0%
제주	10	10	100.0%
계	570	519	91.1%

나. 회수된 자료의 분석⁶⁾

설문응답자들에 대한 인구통계적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3> 응답자의 직군

직군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①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117	27.5%	27.5%
② 회계사무소 기장담당자	309	72.5%	100.0%
합 계	426	100.0%	

6) 원시자료의 정규성 검토를 위하여 항목별 도수분포표를 그려본 결과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원시자료의 항목별 평균과 메디안 값의 차이는 거의 일치하거나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응답자의 연간소득수준

연간소득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① 5천만원 초과	70	16.3%	16.3%
②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17	27.5%	43.8%
③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20	28.2%	72.0%
④ 2천만원 이하	119	28.0%	100.0%
합 계	426	100.0%	

〈표 5〉 응답자의 사회활동의 정도

사회활동의 정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① 적극적인 편	17	4.0%	4.0%
② 보통인 편	129	30.2%	34.2%
③ 소극적인 편	280	65.8%	100.0%
합 계	426	100.0%	

IV. 실증분석결과

1.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가.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변수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타당성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선정된 변수들에 대하여 개념적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 중 직각회전방법에 의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대부분의 각 요인별 요인적재값이 0.7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어 그 개념의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과학에서 전체 분산의 약 50%~60%를 설명하는 것을 보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고려할 때 누적분산설명분(%) 값이 약 61% 정도이므로 각 문항들을 4개 요인으로 묶는 과정에서의 타당도는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⁷⁾

7) 종속변수인 조세회피 요인에 대한 설문문항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설문지의 각 문항이 각 요인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으므로 타당성 검토는 하지 않았다.

〈표 6〉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

변수명	설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상호신뢰성	[Ⅱ-1]번	.773			
	[Ⅱ-2]번	.710			
홍보 및 교육	[Ⅱ-3]번		.709		
	[Ⅱ-4]번		.804		
전자신고납부제도	[Ⅱ-5]번			.811	
	[Ⅱ-6]번			.826	
납세인센티브	[Ⅱ-7]번				.829
	[Ⅱ-8]번				.754
Eigen 값		1.447	2.041	1.099	1.151
누적분산설명분(%)		36.837	45.505	52.936	60.795

나. 신뢰성 분석

신뢰성 검증은 정확성과 결과의 일관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적 일관성 검사법(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새로운 요인들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측정에 사용된 문항들 사이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방법인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이용하였다.

〈표 7〉에서 보듯이 모든 요인들의 신뢰성은 비교적 만족스럽게 나타났다. 세무행정요인의 하위 요인인 납세인센티브의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680으로서 변수측정을 위한 문항들 중 가장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여 주었다. 한편으로 상호신뢰성의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549로 가장 낮은 내적 일관성을 보여 주었다.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5 이상이므로 전반적으로 설문응답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고 판명할 수 있다.⁸⁾

〈표 7〉 요인별 신뢰성 계수

최초요인	하위요인	설문항목 수	크론바하 알파
세무행정요인	상호신뢰성	2	0.549
	홍보 및 교육	2	0.654
	전자신고납부제도	2	0.643
	납세인센티브	2	0.680

8) 종속변수인 조세회피 요인에 대한 설문문항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설문지의 각 문항이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신뢰성 검토는 하지 않았다.

설문항목인 세무행정요인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기술통계량

항목	문항번호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분산
상호신뢰성	Ⅱ-1	426	1	5	2.23	.81	.658
	Ⅱ-2	426	1	5	2.73	.86	.736
홍보 및 교육	Ⅱ-3	426	1	5	2.81	.87	.755
	Ⅱ-4	426	1	5	2.72	.91	.824
전자신고납부제도	Ⅱ-5	426	1	5	2.43	.88	.778
	Ⅱ-6	426	1	5	2.27	.77	.597
납세인센티브	Ⅱ-7	426	1	5	2.89	.86	.748
	Ⅱ-8	426	1	5	3.00	.89	.783

2. 가설검증

가. 세무당국과의 상호신뢰성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검증

세무당국과의 상호신뢰성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인 상호신뢰성이 종속변수인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대하여 가지는 설명력은 10.1%이고, 전체 회귀선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은 0.449로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회귀계수가 유의한지 파악한 결과 상호신뢰성의 유의확률이 0.503으로서 회귀모형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상호신뢰성은 조세전문가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상호신뢰성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기각된다.

<표 9> 상호신뢰성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text{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 = \beta_0 + \beta_1 \text{상호신뢰성} + \varepsilon$$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541	.136		18.741	.000
상호신뢰성	-.035	.053	-.025	-.670	.503

$$R^2 = .101$$

$$F = .449$$

세무당국과의 상호신뢰성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직군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명목척도(이산형변수)인 세무대리인의 직군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0.8%이고, F값은 0.353으로서 추정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호신뢰성의 유의확률은 0.57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미변수인 기장담당자의 회귀계수에 대한 t값은 0.525, 유의확률은 0.615로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호신뢰성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세무대리인의 직군은 상호신뢰성에 따른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상호신뢰성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직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1]은 기각된다.

<표 10> 상호신뢰성의 영향에 대한 세무대리인 직군의 영향

$$\text{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 = \beta_0 + \beta_1 \text{상호신뢰성} + \beta_2 \text{기장담당자} + e$$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521	.156		16.106	.000
상호신뢰성	-.032	.057	-.023	-.581	.570
기장담당자	.048	.089	.023	.525	.615
$R^2 = .208$					
$F = .353$					

상호신뢰성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 더미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한 <표 11>에서 보듯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7.1%이고, F값은 1.352로서 추정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호신뢰성의 유의확률은 0.767로서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미변수로 주어진 5천만원 이상의 유의확률과 3천만원~5천만원의 유의확률은 각각 0.723과 0.193으로서 모두가 유의하지 않다고 분석되었다.

즉, 세무대리인의 소득수준은 상호신뢰성에 따른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신뢰성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2]는 기각된다.

〈표 11〉 상호신뢰성의 영향에 대한 세무대리인 소득수준의 영향

$$\text{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 = \beta_0 + \beta_1 \text{상호신뢰성} + \beta_2 \text{5천만원 이상} + \beta_3 \text{3-5천만원} + \varepsilon$$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452	.155		15.857	.000
상호신뢰성	-.018	.053	-.012	-.331	.767
5천만원 이상	-.044	.115	-.018	-.357	.723
3천만원 - 5천만원	.177	.099	.079	1.735	.193
$R^2 = .171$					
$F = 1.352$					

상호신뢰성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 사회활동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더미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12>이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1.0%이고, F값은 2.363으로서 추정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호신뢰성의 유의확률은 0.270으로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더미변수로 주어진 소극적인 편은 유의확률이 0.365로 나타나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세무대리인의 사회활동의 정도는 상호신뢰성에 따른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신뢰성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사회활동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3]은 기각된다.

〈표 12〉 상호신뢰성의 영향에 대한 세무대리인 사회활동 정도의 영향

$$\text{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 = \beta_0 + \beta_1 \text{상호신뢰성} + \beta_2 \text{소극적인 편} + \varepsilon$$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479	.141		17.617	.000
상호신뢰성	-.031	.053	-.023	-.589	.270
소극적인 편	.176	.082	.084	2.172	.365
$R^2 = .110$					
$F = 2.363$					

나. 세무당국의 홍보 및 교육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검증

세무당국의 홍보 및 교육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인 홍보 및 교육이 종속변수인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대하여 가지는 설명력은 38.2%이고, 전체 회귀선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은 6.173으로서 유의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회귀계수가 유의한지 파악한 결과 홍보 및 교육의 유의확률이 0.097로서 회귀모형의 회귀계수가 유의확률 10%에서 유의함을 보여준다. 또한 회귀식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홍보 및 교육의 비표준화계수(B)는 값이 -0.045이므로 종속변수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홍보 및 교육은 유의확률 10%에서 종속변수인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홍보 및 교육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채택된다.

<표 13> 홍보 및 교육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text{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 = \beta_0 + \beta_1 \text{홍보 및 교육} + \varepsilon$$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573	.136		18.881	.000
홍보 및 교육	-.045	.047	-.035	-.953	.097

R² = .382
F = 6.173*

* 유의확률 10%하에서 유의함을 의미

홍보 및 교육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세무대리인의 직군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명목척도인 세무대리인의 직군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3.2%이고, F값은 0.662로서 추정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홍보 및 교육의 유의확률은 0.276으로서 유의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미변수로 주어진 기장담당자의 유의확률도 0.579로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세무당국의 홍보 및 교육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세무대리인의 직군은 홍보 및 교육에 따른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홍보 및 교육이 조세전문가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직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1]은 기각된다.

〈표 14〉 홍보 및 교육의 영향에 대한 세무대리인 직군의 영향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 = $\beta_0 + \beta_1$ 홍보 및 교육 + β_2 기장담당자 + ε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601	.146		17836	.000
홍보 및 교육	-.059	.048	-.045	-1.229	.276
기장담당자	-.036	.087	-.018	-.421	.579

$R^2 = .238$
 $F = .658$

세무당국의 홍보 및 교육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더미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15>과 같다.

<표 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7.0%이고, F값은 2.489로서 추정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홍보 및 교육의 유의확률은 0.481로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미변수로 주어진 5천만원 이상과 3천만원~5천만원의 유의확률도 각각 0.766과 0.351로서 모두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세무대리인의 소득수준은 홍보 및 교육에 따른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홍보 및 교육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2]는 기각된다.

〈표 15〉 홍보 및 교육의 영향에 대한 세무대리인 소득수준의 영향

$$\text{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 = \beta_0 + \beta_1 \text{홍보 및 교육} + \beta_2 \text{5천만원 이상} + \beta_3 \text{3-5천만원} + \varepsilon$$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507	.159		15.744	.000
홍보 및 교육	-.034	.048	-.026	-.711	.481
5천만원 이상	-.047	.116	-.019	-.399	.766
3천만원 - 5천만원	-.162	.099	-.074	-1.616	.351

$R^2 = .170$
 $F = 2.489$

세무당국의 홍보 및 교육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사회활동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더미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한 <표

16>에서 보듯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9.5%이고, F값은 2.272로서 추정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홍보 및 교육의 유의확률은 0.637이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미변수로 주어진 소극적인 편의 유의확률도 0.276으로서 모두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무대리인의 사회활동의 정도는 교육 및 홍보에 따른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홍보 및 교육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사회활동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3]은 기각된다.

〈표 16〉 홍보 및 교육의 영향에 대한 세무대리인 사회활동 정도의 영향

$$\text{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 = \beta_0 + \beta_1 \text{홍보 및 교육} + \beta_2 \text{소극적인 편} + e$$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515	.140		17.977	.000
홍보 및 교육	-.043	.047	-.033	-.906	.637
소극적인 편	-.180	.083	-.083	-2.297	.276

$R^2 = .095$
 $F = 2.272$

다.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검증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인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이 종속변수인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대하여 가지는 설명력은 48.1%이고, 전체 회귀선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은 12.356으로서 유의적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회귀계수가 유의한지 파악한 결과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서 회귀모형의 회귀계수가 유의확률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회귀식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전자신고납부제도 확립의 비표준화계수(B)는 값이 -0.185이므로 종속변수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은 유의확률 1%에서 종속변수인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채택된다.

〈표 17〉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text{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 = \beta_0 + \beta_1 \text{전자신고납부제도} + \varepsilon$$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063	.124		16.606	.000
전자신고납부제도	-.185	.051	-.117	-3.236	.000

$R^2 = .481$

$F = 12.356^*$

* 유의확률 1%하에서 유의함을 의미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직군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명목척도인 세무대리인의 직군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4.1%이고, F값은 10.712로서 추정된 회귀모형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신고납부제도 확립의 유의확률은 0.000으로 유의확률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미변수로 주어진 기장담당자의 유의확률은 0.001로서 유의확률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세무대리인의 직군은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에 따른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산체계발전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직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1]은 채택된다.

〈표 18〉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의 영향에 대한 세무대리인 직군의 영향

$$\text{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 = \beta_0 + \beta_1 \text{전자신고납부제도} + \beta_2 \text{기장담당자} + \varepsilon$$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016	.138		14.619	.000
전자신고납부제도	-.194	.052	-.120	-3.236	.000
기장담당자	-.278	.084	-.040	-1.059	.001

$R^2 = .541$

$F = 10.712^*$

* 유의확률 1%하에서 유의함을 의미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더미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한 <표 19>에서와 같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7.8%이고, F값은 10.086으로서 추정된 회귀모형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의 유의확률은 0.000이기 때문에 유의확률 1%에서 유의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더미변수로 주어진 2천만원~3천만원의 유의확률은 0.379로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에 3천만원~5천만원의 유의확률은 0.000으로서 유의확률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며, 연간소득수준은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에 따른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2]는 부분적으로만 채택된다.

<표 19>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의 영향에 대한 세무대리인 소득수준의 영향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 = $\beta_0 + \beta_1$ 전자신고납부제도 + β_2 3-5천만원 + β_3 2-3천만원 + ε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941	.151		12.830	.000
전자신고납부제도	-.200	.052	-.128	-3.451	.000
3천만원-5천만원	-.382	.099	-.105	-2.419	.000
2천만원-3천만원	-.042	.098	-.019	-.458	.379

$R^2 = .575$

$F = 10.085^*$

* 유의확률 1%하에서 유의함을 의미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더미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한 <표 20>에서 보듯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9.2%이고, F값은 4.721로서 추정된 회귀모형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의 유의확률은 0.001이기 때문에 유의확률 1%에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더미변수로 주어진 소극적인 편의 유의확률은 0.261로서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지만 세무대리인의 사회활동의 정도는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에 따른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사회활동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3]은 기각된다.

〈표 20〉 전자신고납부제도 확립의 영향에 대한 세무대리인 사회활동 정도의 영향

$$\text{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 = \beta_0 + \beta_1 \text{전자신고납부제도} + \beta_2 \text{소극적인 편} + \varepsilon$$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012	.128		15.755	.000
전자신고납부제도	-.185	.051	-.116	-3.198	.001
소극적인 편	-.184	.071	-.083	-2.357	.261

$R^2 = .292$
 $F = 4.721^*$

* 유의확률 1%하에서 유의함을 의미

라. 납세인센티브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검증

납세인센티브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인 납세인센티브가 종속변수인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대하여 가지는 설명력은 53.7%이고, 전체 회귀선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은 4.626으로서 유의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회귀계수가 유의한지 파악한 결과 납세인센티브의 유의확률이 0.032로서 회귀모형의 회귀계수가 유의확률 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회귀식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납세인센티브의 비표준화계수(B)는 값이 -0.105이므로 종속변수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납세인센티브가 유의확률 5%에서 종속변수인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납세인센티브는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는 채택된다.

〈표 21〉 납세인센티브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text{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 = \beta_0 + \beta_1 \text{납세인센티브} + \varepsilon$$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783	.144		19.268	.000
납세인센티브	-.105	.047	-.087	-2.396	.032

$R^2 = .537$
 $F = 4.626^*$

* 유의확률 5%하에서 유의함을 의미

납세인센티브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직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명목척도인 세무대리인의 직군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3.1%이고, F값은 7.851로서 추정된 회귀모형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납세인센티브의 유의확률은 0.025로서 유의확률 5%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더미변수로 주어진 기장담당자의 유의확률은 0.006으로서 유의확률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납세인센티브는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세무대리인의 직군은 납세인센티브에 따른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인센티브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직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4-1]은 채택된다.

〈표 22〉 납세인센티브의 영향에 대한 세무대리인 직군의 영향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 = $\beta_0 + \beta_1$ 납세인센티브 + β_2 기장담당자 + ε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803	.150		18.655	.000
납세인센티브	-.109	.048	-.095	-2.612	.025
기장담당자	-.223	.084	-.019	-1.058	.006

$R^2 = .431$

$F = 7.851^*$

* 유의확률 5%하에서 유의함을 의미

납세인센티브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더미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21>과 같다. <표 23>에서와 같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4.8%이고, F값은 7.753으로서 추정된 회귀모형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납세인센티브의 유의확률은 0.026으로서 유의확률 5%에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더미변수로 주어진 3천만원~5천만원의 유의확률은 0.002이므로 유의확률 1%에서 유의하다. 반면에 2천만원~3천만원의 유의확률은 0.638로서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납세인센티브는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지만 연간소득의 크기는 납세인센티브에 따른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인센티브가 조세전문가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4-2]는 부분적으로만 채택된다.

〈표 23〉 납세인센티브의 영향에 대한 세무대리인 소득수준의 영향

$$\text{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 = \beta_0 + \beta_1 \text{납세인센티브} + \beta_2 \text{3-5천만원 이상} + \beta_3 \text{2-3천만원} + \varepsilon$$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941	.151		12.830	.000
납세인센티브	-.109	.052	-.128	-3.448	.026
3천만원-5천만원	-.236	.099	-.105	-2.412	.002
2천만원-3천만원	-.042	.098	-.019	-.452	.638
$R^2 = .448$					
$F = 7.753^*$					

* 유의확률 5%하에서 유의함을 의미

납세인센티브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사회활동정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더미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한 <표 24>에서 보듯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8.9%이고, F값은 2.811로서 추정된 회귀모형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납세인센티브의 유의확률은 0.039로서 유의확률 5%에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더미변수로 주어진 소극적인 편의 유의확률이 0.356으로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납세인센티브는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활동의 정도는 납세인센티브에 따른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인센티브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사회활동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4-3]은 기각된다.

〈표 24〉 납세인센티브의 영향에 대한 조세전문가 사회활동 정도의 영향

$$\text{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 = \beta_0 + \beta_1 \text{납세인센티브} + \beta_2 \text{소극적인 편} + \varepsilon$$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723	.153		17.858	.000
납세인센티브	-.103	.048	-.083	-2.251	.039
소극적인 편	-.159	.082	-.071	-2.019	.356
$R^2 = .389$					
$F = 2.811^*$					

* 유의확률 5%하에서 유의함을 의미

V. 결 론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행정요인들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러한 요인들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로는 전국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들과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기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었으며 이들에게는 총 5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519부 중에서 연구대상자가 아닌 자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을 제외한 426부를 대상으로 하여 통계분석에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행정요인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더미변수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당국과의 상호신뢰성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세무대리인의 특성요인도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의외의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세무대리인이라는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세무당국의 홍보 및 교육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특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납세자에 대하여 납세 의식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려면 세무대리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자신고납부제도의 확립은 조세회피성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사회활동의 정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전자신고납부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발전에 따라 전자신고납부제도가 정착되면 조세회피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세무당국이 최근에 실시하기 시작한 납세인센티브제도는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세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하면 조세회피성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사회활동의 정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새로운 납세인센티브제도를 개발하여 확대하면 조세회피행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면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을 줄여 조세공평과 조세정의의 실현 및 소득과 자원의 적정배분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무당국은 전자신고납부제도를 정착시키고 각종의 납세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동시에 납세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세무대리인의 사회활동의 정도는 조세회피성향과는 무관하여 정책의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더미변수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모형이 다소 미흡하지만 향후에는 회귀모형을 좀 더 정교하게 구축하여 시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원태, 2003. “세무대리인의 윤리적 판단과 공격성”,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기정, 조용언, 1999. “환경요인과 개인특성요인이 세무대리인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제1권 : 53-93.
- 유시영, 1992. “조세회피 의사결정 요소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표, 1997. “납세이행에 있어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중원, 1995. 「경제경영통계학」 박영사.
- 이환근, 1998.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태영, 1990.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기우, 2007. “세무대리인의 직업윤리규정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정화 · 김연식, 2004.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인구통계적 요인의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 17권 제1호 : 313-342.
- 홍정화 · 김완희, 1997. “납세자의 특성과 탈세수단선택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0호 : 151-175.
- Cuccia, A. D., 1994. “The Effects of Increased Sanctions on Paid Tax Preparers : Integrating Economic and Psychological Factor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16(1) : 41-66.
- Duncan, W. A., D. LaRue and P. M. J. Reckers. 1989.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Influence of Selected Economic and Noneconomic Variables on Decision Making by Tax Professionals.” *Advances in Taxation*. Vol. 2 : 91-106.
- Erard, B., 1993. “Taxation with Representation : An Analysis of the Role Tax Practitioners in Tax Complianc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52(2) : 163-197.
- Graetz M. and L. Wild, 1985. “The Economics and Tax Compliance : Fact and Fantasy”, *National Tax Journal*, Vol. 38(3) : 355-363.
- Gutman, P. M., 1977. “The Subterranean Economy”, *Financial Analysis Journal*, Vol. 33 : 4.
- Jackson, B. R, and V. C. Milliron, 1986. “Tax Compliance Research : Finding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 125-165.
- Lewis, A., 1982. “An Empirical Assessment of Tax Mentality”, *Public Finance* Vol. 34(2) : 245-257.
- Kahneman, D. and A. Tversky. 1979. “Prospect Theory : An Analysis of Decesion Under Risk.” *Econometrica*. March : 263-291.
- Milliron, V. 1988. “Tax Compliance : An Investigation of Key Feature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9. Spring : 84-104.
- Sanders, D. L. and R. W. Wyndelts, 1989. “An Examination of Tax Practitioners' Decisions Under Uncertainty.” *Advances in Taxation*. Vol. 2 : 42-43.

- Schisler, D. L. 1994. "An Experimental Examination of Factors Affecting Tax Preparers' Aggressiveness — A Prospect Theory Approach."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16(2), Fall : 124—142.
- Slemrod, J., and N. Sorum, 1984. "The Compliance Cost of the U.S. Individual Income Tax System", *National Tax Journal*, Vol. 37(3) : 461—474.
- Song, Y. D. and T. E. Yabrough, 1978. "The Ethics and Taxpayer Attitudes : A Surve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September—October : 442—452.
- Spicer, M. W. and R. Hero. 1985. "Tax Evasion and Heuristics : A Research Not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6 : 263—267.
- Spicer, M. W. and S. B. Lundstedt, 1976. "Audit Probabilities and Tax avoidance Decision : An Experimental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241—245.
- _____ and L. A. Becker, 1980. "Fiscal Inequity and Tax avoidance : An Experimental Approach", *National tax Journal* : 171—175.
- Srinivasan, T. N. 1973. "Tax Avoidance : A Mode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 : 339—346.
- Tittle, C., 1980. *Sanctions and Social Deviance : The Question of Deterrence*, New York, Prager.
- Vogel, J. 1974. "Taxation and Public Opinion in Sweden : An Interpretation of Resent Survey Data", *National Tax Journal*, Vol. 27, No.4. December : 499—513.
- Von Neumann, J. and O. Morganstern, 1947.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 2nd ed. NJ : Princeton niversity Press.
- Witte, A. and D. Woodbury, 1983. "The Effect of Tax Laws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 *Working Paper* 83—1, Department Economic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Young, 1994. "Factors Associated with Noncompliance Evidence from Michigan Tax Amnesty Program",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Fall) : 82—105.

A Study on the Tax Administrative Factors to have Influence on the Tax Practitioner's Propensity to Tax Avoidance - Tax Practitioner's Characteristics -

Jung Hwa Hong* · Byoung Sook Ko**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empirically analyze drivers of tax avoidance done by tax practitioners, and verify whether those drivers vary according to tax practition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sample was accountants and clerks in charge of tax offices countrywide. 57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519 were returned. About 100 questionnaires were screened out through editing and coding process. Final size of the sample was 426.

The summary and the conclusion from the study are as below.

First, mutual trust is not a significant variable for tax avoidance. This finding is different from that of previous researches. The difference of sample group is believed to bring the different result.

Second, publicity and education are confirme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 for tax avoidance. Increase of publicity and education tends to decrease tax avoidance. This is no different than previous researches. This indicates that continuous publicity and education on tax liability will lessen tax avoidance.

Third, establishment of electronic filing and payment system is verifi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ax avoidance, showing that the development of computer system decreases tax avoidance. As tax authorities establish better computer system, tax avoidance will decrease.

Fourth, tax incentive program also turned out to be a significant variable for tax avoidance. Increase of tax incentive programs will decrease tax avoidance. This suggests that development of various tax incentive program will help in declining tax avoidance.

<Key words> tax administrative factor, tax avoidance propensity, tax practitioner's characteristics

* Professor, Kyungwon University

** President, Kwangkyo TNS Co., Ltd.

<부록> 설문지

I. 응답자의 특성에 관련한 설문

다음 사항들은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련한 설문입니다.

설문내용 중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체크(V)해 주십시오.

[I-1] 귀하는 다음 어느 직군에 해당합니까?

(여러 곳에 속할 경우 주된 직군 하나만 표시하십시오)

①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② 회계사무소 기장담당자	
③ 세무공무원	
④ 사업경영자 또는 회사의 임직원	
⑤ 기타	

[I-2] 귀하의 연간소득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억원 초과	
② 5천만원 초과 - 1억원	
③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④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⑤ 2천만원 이하	

[I-3] 귀하의 사회(종교, 봉사, 기부)활동의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편이다.	
② 열심히 활동하는 편이다.	
③ 보통인 편이다.	
④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편이다.	
⑤ 거의 활동하지 않는다.	

II. 세무행정에 관련한 설문

다음 사항들은 세무행정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한 설문입니다. 설문내용 중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체크(V)해 주십시오.

[II-1] 귀하께서는 세무당국이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을 신뢰하고 세무행정을 집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매우 그렇다.
- ② () 그렇다.
- ③ () 그저 그렇다.
- ④ () 그렇지 않다.
- ⑤ () 전혀 그렇지 않다.

[II-2] 귀하께서는 세무당국의 세무행정을 신뢰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매우 그렇다.
- ② () 그렇다.
- ③ () 그저 그렇다.
- ④ () 그렇지 않다.
- ⑤ () 전혀 그렇지 않다.

[II-3] 귀하께서는 세무당국이 세금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면 조세회피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 매우 그렇다.
- ② () 그렇다.
- ③ () 그저 그렇다.
- ④ () 그렇지 않다.
- ⑤ () 전혀 그렇지 않다.

[II-4] 귀하께서는 세무당국에서 보내는 안내문에 세무행정안내 및 세법지식 등을 해설하고 긍정적인 납세의무를 권장하면 조세회피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 매우 그렇다.
- ② () 그렇다.
- ③ () 그저 그렇다.
- ④ () 그렇지 않다.
- ⑤ () 전혀 그렇지 않다.

[Ⅱ-5] 귀하께서는 전산시스템 체계의 발전에 따라, 세무자료가 상호 체크되므로 조세회피행위가 모두 적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매우 그렇다.
- ② () 그렇다.
- ③ () 그저 그렇다.
- ④ () 그렇지 않다.
- ⑤ () 전혀 그렇지 않다.

[Ⅱ-6] 귀하께서는 최근 도입된 신용카드사용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제도 등 전자신고제도가 조세 회피행위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매우 그렇다.
- ② () 그렇다.
- ③ () 그저 그렇다.
- ④ () 그렇지 않다.
- ⑤ () 전혀 그렇지 않다.

[Ⅱ-7] 귀하께서는 세금마일리지 등 납세인센티브 제도를 통하여 혜택을 주면 조세회피행위가 감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매우 그렇다.
- ② () 그렇다.
- ③ () 그저 그렇다.
- ④ () 그렇지 않다.
- ⑤ () 전혀 그렇지 않다.

[Ⅱ-8] 귀하께서는 모범납세자 표창을 통하여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면 조세회피행위가 감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매우 그렇다.
- ② () 그렇다.
- ③ () 그저 그렇다.
- ④ () 그렇지 않다.
- ⑤ () 전혀 그렇지 않다.

Ⅲ. 조세회피성향에 관련한 설문

[Ⅲ-1] 세금회피의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겠습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Ⅲ-2] 수단과 관계없이 세금을 적게 낸 납세자를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Ⅲ-3] 가산세 등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기업일수록 사업에 성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